

전라북도 공고 제2020-1159호

- 2020년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서류제출)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서류제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전라북도지사

I.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 합격자 : 529명

□ 채용구분

구분	합계	공개경쟁		경력경쟁												
		화재진압		소방 관련학과		구급		응급 구조학과		구조		차량 정비	건축	항해사	정보통신	회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일반	화학	남	남	남	남	남
선발 예정 인원	307	174	10	18	5	34	12	9	3	28	4	2	2	3	2	1
필기 합격 인원	529	261	15	41	12	71	29	19	7	56	2	5	2	8	1	-

※ 필기합격인원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화재진압 1.5배수, 소방관련학과·구급·응급구조학과·구조(일반) 2배수, 구조(화학)·차량정비·건축·항해사·정보통신·회계 3배수) 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2항)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안내

- 기 간 : 2020. 7. 3.(금) 11:00 ~
- 열람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 후 개별 열람

II. 체력시험 시행

□ 체력시험 일정 및 장소

- 응시대상 : 529명(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시험기간 : 2020. 7. 13.(월) ~ 7. 17.(금) / 5일간
- 시험시간 : 오전조 08:30 ~ 12:00 / 오후조 13:30 ~ 18:00
 * **오전조 08:00, 오후조 13:00부터 입실 가능**
- 시험장소 : 김제실내체육관(전북 김제시 도작로 224-98) [붙임1] 참조
- 일정구분 * 체력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시험일	총인원	조	채용분야		대상자(응시번호)	인원
7.13.(월)	45	오전	공채	화재진압(남)	19090016 ~ 19090253	45
	60	오후	공채	화재진압(남)	19090257 ~ 19090746	60
7.14.(화)	45	오전	공채	화재진압(남)	19090747 ~ 19091059	45
	60	오후	공채	화재진압(남)	19091060 ~ 19091353	60
7.15.(수)	44	오전	공채	화재진압(여)	합격자 전원	15
				경채	응급구조학과(남)	합격자 전원
			응급구조학과(여)		합격자 전원	7
			건축		합격자 전원	2
			정보통신	합격자 전원	1	
7.16.(목)	59	오후	공채	화재진압(남)	19091357 ~ 19091621	51
				향해사	합격자 전원	8
7.16.(목)	41	오전	경채	소방관련학과(여)	합격자 전원	12
				구급(여)	합격자 전원	29
7.16.(목)	71	오후	경채	구급(남)	합격자 전원	71
7.17.(금)	63	오후	경채	소방관련학과(남)	합격자 전원	41
				구조	합격자 전원	56
				화학구조	합격자 전원	2
7.17.(금)	5			차량정비	합격자 전원	5

○ 응시자 준비물 : **마스크**, 응시표, 신분증, 운동복, 운동화, 필기도구 등

※ 제자리멀리뛰기는 전자식으로 측정할 예정으로, 스파이크·축구화 등 신발 바닥면이 돌출되어 실내 마루 및 측정판을 파손시킬 우려가 있는 신발은 착용 불가하며, 실내운동화만 가능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2]**

□ **체력시험 측정방법 : [붙임3]**

□ **도핑테스트 안내문 [붙임4]**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붙임5]**의 복용여부 확인

○ 모든 체력시험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실시 동의서<서식3>**를 체력시험 등록 시 제출

※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서식4>**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등록 시)

○ 도핑테스트는 **지원분야별 응시인원의 7%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하며, 지원분야별 체력시험 일정이 모두 끝난 다음에 시료를 채취함

※ **불합격자를 대비한 도핑테스트 예비 대상자 선정(3%)**

○ 도핑테스트 대상자로 선정된 응시자가 체력시험에 불합격(중도포기 포함)할 경우 **예비로 선정된 대상자(3%)**가 도핑테스트 시료채취에 응하여야 함

○ 도핑테스트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처리함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판정되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당해시험을 무효 또는 합격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유발하는 약물**은 “감기약(메틸에페트린)”복용으로 검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적어도 3일전부터는 감기약 복용에 주의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19.1.8)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 합격자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총점의 50% (60점 중 3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발 표 일 : 2020. 7. 20.(월)

○ 공고방법 (아래 홈페이지 게재)

- 전북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전북소방본부 홈페이지(<http://www.sobang.kr>)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신체검사, 적성검사 등 실시 안내 공고

Ⅲ.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사항**

□ **코로나19 확진환자 ⇨ 시험응시 불가**

○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단, 체력시험 최종일 전(7.16.(목)) 완치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응시가능

□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 ⇨ 체력시험 최종일 별도 시험 실시**

○ 응시자 중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별도 장소에서 시험이 가능하며, 사전신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자 중 타 시·도에 거주하는 자가격리자도 신청 가능

◎ **자가격리자 사전신고 신청절차**

- 사전 신청기간 : 2020. 7. 8.(수) 09:00 ~ 7. 16.(목) 18:00까지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 불가**

- 신청방법 : 전라북도 시험시행본부 사전 연락 후(사전 유선신청 반드시 요함),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연 락 처 : ☎063-280-2307

- 제출서류

1. 신청서[서식1] / 2. 격리통지서 사본

- 제출처

(우 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총무과 2층 공무원채용팀

(이메일) shyguy963@korea.kr

※ 자가격리 사전신고 대상자에게 별도 시험장소 및 응시방법 등은 향후 개별 안내

□ 시험 당일 고사장 입구에서 발열체크 후 이상 증상이 없는 응시자

⇒ 체력시험 응시

- 체력시험장은 마스크를 착용한 응시자만 입장 가능하며,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소독 후 시험장 입실하고, 체력시험 중에도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감독관이 응시자를 확인하는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에 응해야 합니다.
- 모든 종목 측정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윗몸일으키기와 왕복오래달리기 종목 평가 시에만 벗는 것이 허용됩니다. (단, 측정이 종료되면 바로 착용하여야 함)

□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 ⇒ 마지막 순번 조정 후 별도 실시

-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37.5℃ 이상)이 나타난 응시자의 경우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문진표를 작성 후 응시여부를 결정하며, 일반 응시자와 이동 동선을 달리하여 마지막 순번으로 조정 후 별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 시험장 입실(퇴실) 시 유의사항(준수사항)

- 전라북도 시험시행본부에서는 모든 시험장에 시험전일 및 시험종료 후 철저한 소독관리를 할 예정이며,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아래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행동수칙]

- ▶ 시험장 방역 및 수험생 위생관리를 위해 모든 시험장은 오전조 08:00부터, 오후조 13:00부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는 반드시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시험시간 중, 시험 종료 후 고사장을 벗어날 때 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 착용 시 고사장 출입 불가
- ▶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발열체크 진행에 협조해야하며, 발열체크 대기 시 응시자간 안전거리를 최소 1.5m이상 유지하여 주시고, 방역담당관의 통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의심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방역담당관 문진 후 마지막 순번으로 조정하여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징후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고발 조치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열체크 후 이상이 없는 수험생은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 후 해당 체력시험장으로 입실하여야 하며, 화장실 사용 후 재입실시에도 반드시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 후 시험장으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 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장 환기를 위해 시험 중 창문 등을 상시 개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여 양해바랍니다.
- ▶ 감염방지를 위해 **시험장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휴지 등)는 본인의 가방 등에 넣어** 직접 가져가 주시고, 시험장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 ※ 발열체크 시 이상증상이 나타나 마지막 순번으로 체력시험을 진행한 응시자는 타 응시자가 모두 퇴실한 이후에 귀가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 19 감염예방 위 행동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응시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주민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 운동복 및 운동화를 착용하고 **시험당일 오전조는 08:30까지, 오후조는 13:30까지 체력시험장 입실**

※ 응시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 가능

- 시험장은 수험생만 출입이 가능하며, 가족 및 지인 등은 출입 불가
- 체력시험 측정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험 중 본인 신체상의 건강상태, 질환, 기타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분실 시 본인책임)
- 우천 시에도 체력시험은 예정대로 시행됨
- 제자리멀리뛰기 및 윗몸일으키기 종목은 전자식으로 측정
- 응시자는 시험시행본부에서 안내하는 시험 진행시간을 지켜야 하며,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체력시험 진행 중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귀가 하거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체력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 부상 등의 사유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종목에 응시하지 못하고 귀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전까지 취득한 점수 인정 (응시포기서 작성)
- 본 공고문 안내사항 및 시험당일 응시자 교육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응시자, 시험관리관 지시에 불응하는 응시자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처리 함
- 대리시험 응시자, 도핑테스트 비정상 분석결과자 등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 처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IV.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 서류제출 안내

***서류제출 시 맨앞 표지에 <서식1> 작성 후 편철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체력시험장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체력시험 등록 시 제출
- 장 소 : 체력시험장(김제실내체육관/전북 김제시 도작로 224-98)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①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목록(표지)<서식1>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서식2> ③ 도핑테스트 실시 동의서 1부<서식3> ④ 주민등록표 초본(병적사항 및 주소이력사항 포함) 1부 ⑤ 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⑥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전체경력으로 발급 ⑦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서류 1부(해당자) ⑧ 의사상자 확인서류 1부(해당자) ⑧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부(해당자)<서식4>
공개경쟁		① 가산특전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 운전면허증(대형)에 한하여 공통서류 ②번과 중복 시 생략가능
경력 경쟁	소방 관련 학과	① 최종학력(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4년제 대학교 미졸업자는 성적증명서 및 재학(휴학,자퇴 등)증명서 각 1부 제출 ② 동일학과계통증명서 1부(해당자)<서식5>
	응급 구조 학과	① 최종학력(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②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사본 1부
	구급	① 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사본 1부 ② 경력증명서 1부 ※ 업체의 폐업 등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경력사실확인서<서식7> 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또는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발급) 1부 ④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1부
	구조 일반	① 군 경력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 1부 ※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주특기교육 입교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②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또는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발급) 1부 ③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1부 ④ 특수전임무수행확인서 1부(해당자)

구 분		제 출 서 류
경력 경쟁	구조 화학	① 군 경력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 1부 ※ 제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주특기교육 입교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②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또는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발급) 1부 ③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1부 ④ 최종학력(학위)증명서 1부 ⑤ 동일학과계통증명서 1부(해당자)<서식5>
	차량 정비	① 자격증 사본 1부 ② (정비업체 경력자) 경력증명서 1부 ※ 업체의 폐업 등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경력사실확인서<서식7> (군 경력자)군 경력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 1부(해당자) ※ 제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주특기교육 입교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발급) 1부 ④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1부
	건축	① 자격증 사본 1부 ② 경력증명서 1부 ※ 업체의 폐업 등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경력사실확인서<서식7> 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또는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발급) 1부 ④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1부
	항해사	① 6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증 사본 1부 ② 경력증명서 1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 업체의 폐업 등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경력사실확인서<서식7> 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또는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발급) 1부 ④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1부
	정보통신	① 자격증 사본 1부 ② 경력증명서 1부 ※ 업체의 폐업 등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경력사실확인서<서식7> 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또는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발급) 1부 ④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행)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1부

②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 <서식1>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목록」 : 제출여부에 '○' 표기 후, 첫 장에 편철하여 제출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주민등록표 초본 ※ 주소·이력사항 포함, 공고일(2020. 7. 3.) 이후 발행분
 -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전라북도에 되어 있는 자로서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36개월)이상 인 사람
- ※ 단, 경력경쟁 분야는 거주지 제한 없음
-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 상한 연령을 연장 받은 합격자는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발급가능
- 도핑테스트 실시 동의서<서식3> 미 제출자는 체력시험 응시 불가
- ※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서식4>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시험에 관한 제출·증빙서류에 거짓·위조·변조 등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서류제출 전 기재내용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
- 제출된 서류의 확인결과 기재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자격(면허)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등록하여 필기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은 자격증 사본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확인서류 사본 제출
- 경력증명서는 해당 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상근/비상근 여부 표시), 직책, 담당업무, 징계사항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구조분야 응시자 및 군부대 경력자는 군 경력증명서 및 병적기록표 제출
-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주 40시간에 준함)한 경력을 말함
-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 ※ (예) 비상근 또는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2년 인정
- 근무경력이라 함은 단지 해당경력과 관련된 기관·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實)근무경력을 의미함. 즉 육아휴직·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 다만, 응시요건 기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 월, 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하여 계산

- 역에 의한 계산 방법(「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함
 -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의 기간을 기산(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 월(月), 연(年) 단위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복수의 간헐적 경력기간의 합산
 - 연(年) 단위는 경력 계산에서 역(曆)에 의한 계산이 곤란할 경우 각각의 경력을 일(日) 단위로 환산한 다음 1년(365日)으로 나누어서 경력을 계산
 - 월 단위의 경력 계산의 경우 연단위의 계산을 공제한 뒤 남은 일수를 1개월(30日)로 계산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계약직의 경우)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미제출 시 경력 인정하지 않음)
-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근무경력사실확인서<서식7>와 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사실증명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구조분야 응시자 및 군부대 경력을 인정받고 싶은 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교육입교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를 제출해야 함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제외)

◆ 채용시험(필기, 체력, 면접 등)

- 문의처 : 전북도청 총무과 공무원채용팀
- 연락처 : 063-280-2307

◆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접수증 및 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관련

- 문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연락처 : 1522-0660

[붙임]

※ 응시생은 본 종합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시험에 임해야하며
종합안내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생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V. 종합안내 및 서식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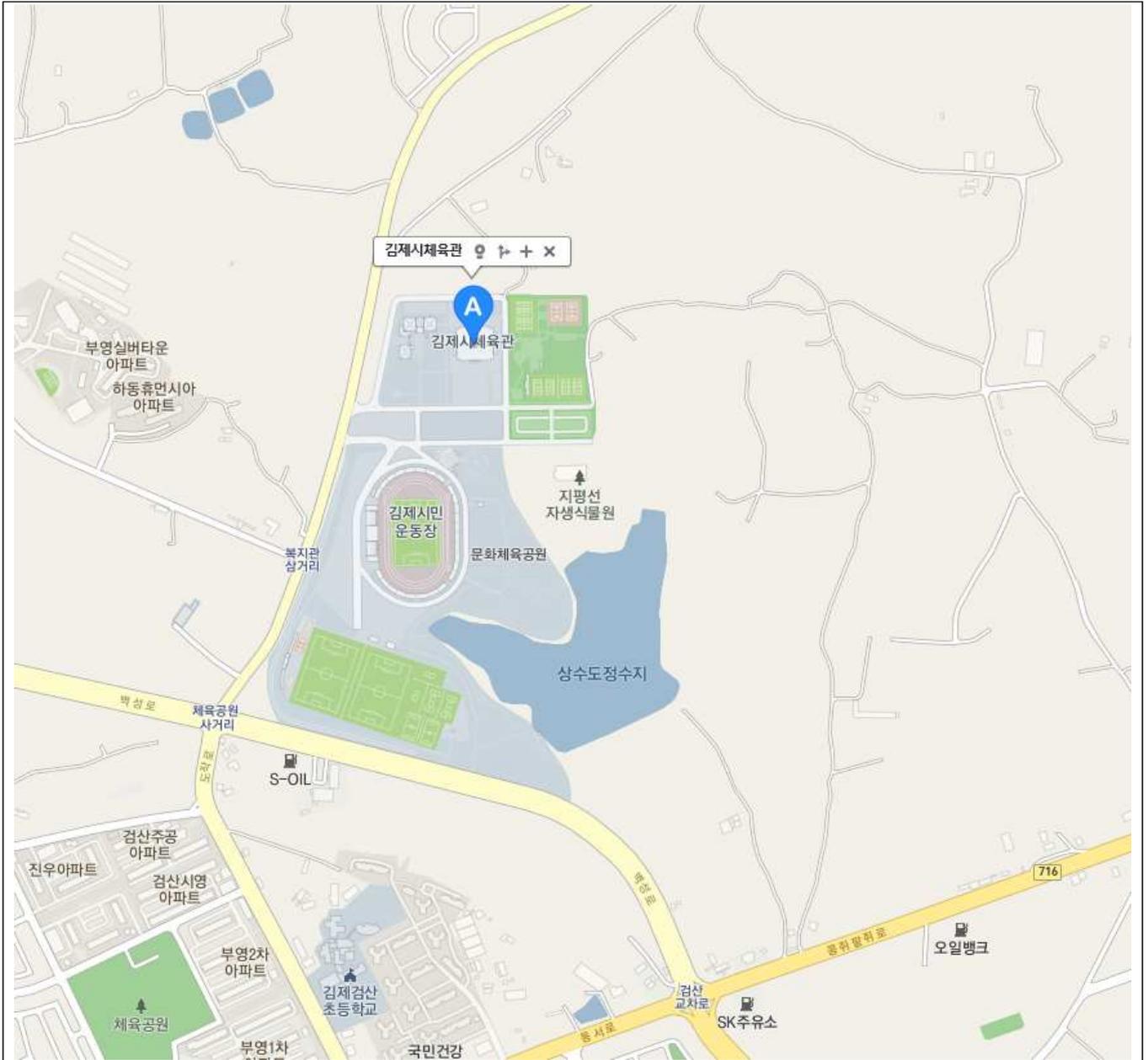
1. 체력시험 시행계획 및 합격자 서류제출	15
[붙임1] 체력시험장 약도	16
[붙임2]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7
[붙임3] 체력시험 측정방법	18
[붙임4] 도핑테스트 안내문	20
[붙임5]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21
[붙임6] 경력경쟁채용시험 자격(면허)·경력 제한	23
[붙임7] 소방 관련 과목	26
[붙임8] 구급분야 종사경력 인정범위	27
2. 서류전형 제출서식	28
<서식1>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목록	29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0
<서식3> 도핑테스트 실시 동의서	31
<서식4>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32
<서식5> 동일계통학과증명서	34
<서식6>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	35
<서식7>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업체의 폐업 등)	36
<서식8> 자가격리자 신청서	37

※ 서식작성은 [별첨] 서식모음(한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체력시험 시행계획 및 합격자 서류제출

붙임1 체력시험장 약도

김제실내체육관 : 전북 김제시 도작로 224-98



※ 주차 가능

붙임2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이하 절사

※ 악력, 앞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붙임3 체력시험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악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 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붙임4 도핑테스트 안내문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절차**

- 시료는 응시자의 소변으로 하고, 시료수집책임관 관리 하에 소변 채취통에 90ml 이상이 되도록 수집 한다.
- 응시자는 시료채취 용기를 직접 선택한 후, 시료수집책임관이 A시료병에 60ml, B시료병에 30ml의 양으로 나누어 넣은 뒤 밀봉하여 응시자가 직접 확인한다.
- 응시자가 시료채취 용기를 선택한 그 시점부터는 시료채취 용기는 응시자 또는 시료수집책임관 입회하에 다룬다.
- 시료채취용기의 관리번호와 성명, 응시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등 개인식별번호는 관련 서류에 기재하고, 응시자가 확인·서명을 한다.
- 시료수집책임관은 소변시료가 분석하기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채취용기에 남은 소변의 비중을 확인하고, 적정비중 이하인 경우에 응시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보관운송책임관이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된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전라북도내 서면으로 통보되며, 분석결과 비정상(양성)이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치료목적 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의견제출시 :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 B시료 분석 요청시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B시료 분석결과가 A시료의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의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한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붙임5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① 금지약물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드로스타논(drostanolone) ▶ 메티놀론(methenolone)
 - ▶ 메타스테론(methasterone)
 - ※ 17β -hydroxy- $2\alpha,17\alpha$ -dimethyl- 5α -androst- 3 -one
 - ▶ 스타노졸롤(stanozolol)
 - ▶ 1-테스토스테론(1-testosterone)
 - ※ 17β -hydroxy- 5α -androst- 1 -en- 3 -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클렌부테롤(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hydrochlorothiazide)
- ▶ 클로로티아지드(chlorothiazide)
- ▶ 푸로세마이드(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 메틸헥산아민(methylhexaneamine, dimethylpentylamine))
- ▶ 메틸에페드린(methylephedrine)
- ▶ 에페드린(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1) 대사물질 :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4. 마약류 : 총 11종

- ▶ 부프레노르핀 (Buprenorphine)
- ▶ 덱스트로모라미드 (dextromoramide)
- ▶ 헤로인 (diamorphine, heroin)
- ▶ 펜타닐 (fentanyl) 및 유도체
- ▶ 히드로모르폰 (hydromorphone)
- ▶ 메타돈 (methadone)
- ▶ 모르핀 (morphine)
- ▶ 옥시코돈 (oxycodone)
- ▶ 옥시몰폰 (oxymorphone)
- ▶ 펜타조신 (pentazocine)
- ▶ 페티딘 (pethidine)

②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붙임6 **경력경쟁채용시험 자격(면허) · 경력 제한**

채용분야	응시자격 등
소방관련학과 (소방사)	<p>▶ 아래의 1~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 소방방재학과 · 소방행정학과 ·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 소방방재학과 · 소방행정학과 ·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p>* 45학점 기준 : 성적증명서에 전공선택, 전공필수 표기된 것</p> <p>※ 유사한 학과는 소방관련 과목이 전공과목의 1/2이상인 학과를 말하며 해당 학교 총장이 발행한 동일학과계통증명서【서식 1】를 제출하여야 함</p>
구급 (소방사)	<p>▶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다음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p> <p>*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p> <p>*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구급 실무경력 인정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p>※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확인서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 (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div>
응급구조학과 (소방사)	<p>▶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p>

채용분야	응시자격 등								
구조 (소방사)	<p>▶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table border="1" data-bbox="351 369 1476 750"> <tr> <td data-bbox="351 369 614 459">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td> <td data-bbox="614 369 1476 459">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CCT)</td> </tr> <tr> <td data-bbox="351 459 614 604">② 특수임무대 (국방부)</td> <td data-bbox="614 459 1476 604">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td> </tr> <tr> <td data-bbox="351 604 614 750">③ 기타 특수전부대</td> <td data-bbox="614 604 1476 750">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등 증명원 제출</td> </tr> </table>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CCT)	② 특수임무대 (국방부)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등 증명원 제출		
① 특수전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CCT)								
② 특수임무대 (국방부)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등 증명원 제출								
화학구조 (소방사)	<p>▶ 아래의 1~2번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 화학병과 또는 화학주특기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이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p>※ 유사한 학과는 화학관련 과목이 전공과목의 1/2이상인 학과를 말하며 해당 학교 총장이 발행한 동일학과계통증명서【서식 1】를 제출하여야 함</p>								
차량정비 (소방사)	<p>▶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래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 아래의 1~3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방차량(펌프차, 고가·굴절사다리차 등) 및 특장차량 제조 정비업체 2.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체(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 제외) 3. 군복무 기간 중 차량정비 또는 차량부대정비 담당업무 								
건축 (소방사)	<p>▶ 건축 직무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한 후 아래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직무분야가 건축이고 전문분야는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설계 관련 경력에 한함</p> <table border="1" data-bbox="351 1825 1476 2049"> <tr> <td data-bbox="351 1825 518 1892">기술사</td> <td data-bbox="518 1825 1476 1892">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td> </tr> <tr> <td data-bbox="351 1892 518 1948">기능장</td> <td data-bbox="518 1892 1476 1948">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td> </tr> <tr> <td data-bbox="351 1948 518 2004">기사</td> <td data-bbox="518 1948 1476 2004">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td> </tr> <tr> <td data-bbox="351 2004 518 2049">산업기사</td> <td data-bbox="518 2004 1476 2049">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td> </tr> </table>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채용분야	응시자격 등								
항해사 (소방사)	<p>▶ 관련법령에 의한 6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p> <p>※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p>								
정보통신 (소방사)	<p>▶ 정보통신 직무분야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table border="1" data-bbox="354 613 1461 913"> <tr> <td data-bbox="354 613 523 667">기술사</td> <td data-bbox="523 613 1461 667">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td> </tr> <tr> <td data-bbox="354 667 523 721">기능장</td> <td data-bbox="523 667 1461 721">통신설비</td> </tr> <tr> <td data-bbox="354 721 523 815">기사</td> <td data-bbox="523 721 1461 815">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td> </tr> <tr> <td data-bbox="354 815 523 913">산업기사</td> <td data-bbox="523 815 1461 913">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td> </tr> </table>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회계 (소방교)	<p>▶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소방기관에서 근무한 소방 공무원 외의 공무원은 2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8급 이상)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관련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한함</p>								

붙임7 **소방 관련 과목**

분 야	과 목
사회과학분야 (12)	소방행정법, 소방정책론, 소방조직론, 소방인사론, 소방재정론, 비교소방론, 소방심리학, 소방홍보론, 재난관리론, 소방법규해설, 소방행정사, 소방학개론
실무분야 (10)	화재진압론, 구조론, 응급처치론, 소방장비론, 소방지휘론, 소방사범처리론, 소방검사론, 위험물시설론, 화재조사론, 소방행정실무
자연과학분야 (14)	연소폭발론, 화재현상론, 특수화재론, 소화약제학, 소방기계시스템설계개론,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건축소방학, 소방경보시스템공학, 소방전기설비공학, 소방정보통신론, 위험물질론, 소화설비론, 제연설비론, 소방학개론

- 비 고 : 1. 1학점 이상으로 편성된 과목
2. 2이상의 과목이 1개의 과목으로 통합편성된 경우 1과목으로 간주
3. 과목 명칭 및 내용이 위 과목과 유사한 경우 소방관련 과목으로 인정하되 그 판단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한다.

구급분야 종사경력 인정범위

(간호사)

-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1급 응급구조사)

-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행한 구급경력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안에서 현장, 이송 중 또는 의료기관안에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한 경력

가. 의료법 제3조 각 항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마.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바.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사.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아.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업무로 근무한 경력(구체적 복무확인서 필요)

자. 군(軍), 해양경찰 등에서 의무병과 및 응급 분야에 근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필요)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2. 서류제출서식

서식1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목록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목록

※ 제출여부에 '○' 표기 후, 첫 장에 철하여 제출

성명	응시번호	응시분야	임용예정 시·도	임용예정 직급	응시요건
홍길동	12345678	구급	전북	소방사/교	공채/경채

연번	제출 서류	제출 여부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2>	
2	[공통] 도핑테스트 실시 동의서 <서식3>	
3	[공통]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해당자) <서식4>	
4	[공통] 주민등록 초본(병적사항 및 주소이력사항 포함)	
5	[공통] 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6	[공통] 운전경력증명서	
7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확인서류	
8	[공채] 가산특전 자격(면허)증 사본	
9	[경채] 최종학력(학위)증명서	
10	[경채] 동일학과계통증명서<서식5>	
11	[경채]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사본	
12	[경채] 경력증명서	
13	[경채] 군 경력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	
14	[경채]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5	[경채]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16	[경채] 근무경력 사실확인서(업체의 폐업 등)<서식7>	
17	[경채] 특수전임수행확인서(해당자)	

서식4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 _____	2. 성별 :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 _____	4. 응시번호 : _____
5. 핸드폰 : _____	6. 이메일 :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응급

기간(주/월) 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 _____ 전공분야 : _____

주소 : _____

전화 : _____ 팩스 : _____ 이메일 : _____

서명 : _____ 날짜 :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 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 _____ 날짜 :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 _____ 날짜 :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제출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서식5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2020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 ○ (전화 : -)

2020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서식6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기관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 형태	
				(예시)	2010.12.25. ~2012.12.22.	상근	
				(예시)	2013.01.01. ~2013.12.31.	비상근 주 20시간	
				(예시)	2014.01.01. ~2014.12.05.	시간제 주 10시간	
	총 근무기간						
	징계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1		확 인 자 2	
성 명			
연락처			
서 명			

년 월 일

_____ 사 (직인)

해당시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 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 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미만 근무자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징계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
- 소방공무원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서 내용을 보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북도청 공무원채용팀 (☎ 063-280-2307)
-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식7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근 무 경 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주)○○병원	2017	주 임	95.05.01. ~ 97.12.01. (2 년 8 월)	응급구조사

입증인(1)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입증인(2) 주 소 :

성 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붙임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1부

서식8

자가격리자 신청서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별도시험장소 응시희망 신청서

□ 성 명 : _____

□ 생년월일 : _____

□ 응시번호 : _____

□ 응시분야 : _____

□ 주 소

○ 주민등록주소 : _____

○ 실거주지주소 : _____

□ 연 락 처

○ 본 인 : _____

○ 가족 등 : _____

○ 기 타 : _____

※ 필기시험 방문수험 준비 및 협조요청을 위한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2개 이상)

위와 같이 별도시험장소 응시를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2020. . .

신 청 인 _____ (서명)

전라북도지사 귀하

참고 1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2020년도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응시자 협조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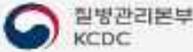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출입이 가능하며,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 시험장 내에서는 응시자간 안전거리 최소1.5m이상 유지하기
- 모든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해야함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해야함 (오전조 08:00부터 / 오후조 13:00부터 수험장 출입 가능)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해당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
-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 지키기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리기
- 감염방지를 위해 시험장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휴지 등)는 본인의 가방 등에 넣어 직접 가져가기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참고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



질병관리본부
KCDC



Healthy Community
Hyeonjeon
NOW



1339
국민행동본부



질병관리본부
www.kdca.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통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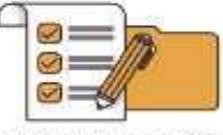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차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령일: 2020. 2. 25

참고 3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1 손바닥
2 손등
3 손가락 사이
4 두 손 모아
5 엄지 손가락
6 손등 밑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1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2 옷 소매로 가리기
3 기침 후 비누로 손씻기

발행일 2019.11.5

참고 4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7-4판 기준

□ **사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관련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 (2020.3.4. 시행)

참고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묻고 답하기

Q1.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피로 및 마른 기침이고, 일부 환자는 통증, 코 막힘, 콧물, 인후통 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경미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2.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CoV와 SARS-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공개된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 또는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을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지게 되면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

Q4.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코로나19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어 증상에 따른 처치가 이루어집니다.
-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6.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